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결	기 관 의 장

제1342호 2018. 7. 9.(월)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 14
- 제34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15

기 타

- 시정알림판 ----- 16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8-9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8. 7. 9.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38	죽산로19번길 17	2018. 07. 09.	건물멸실
39	북향로 186-1	2018. 07. 09.	건물멸실
40	영산로 323	2018. 07. 09.	건물멸실
41	용당로216번길 1	2018. 07. 09.	건물멸실
42	호남로 6	2018. 07. 09.	건물멸실
43	호남로 4-3	2018. 07. 09.	건물멸실
44	수문로 76	2018. 07. 09.	건물멸실
45	영산로121번길 70	2018. 07. 09.	건물멸실
46	영산로121번길 68	2018. 07. 09.	건물멸실
47	영산로121번길 66-1	2018. 07. 09.	건물멸실
48	영산로121번길 66	2018. 07. 09.	건물멸실
49	대양로 99	2018. 07. 09.	건물멸실
50	용당로21번길 12-3	2018. 07. 09.	건물멸실
51	송림로 77-2	2018. 07. 09.	건물멸실
52	자유로 63	2018. 07. 09.	건물멸실
53	달리길 125	2018. 07. 09.	건물멸실

목포시 공고 제2018-927호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9.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와 목포시 간의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 단체협약 사항 이행

-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조정 및 장기재직 휴가일수 분할사용 제한횟수(3회) 추가
(안 제23조제13항)

나. 복무관리 일원화를 위한 복무 관련 조문 신설

○ 제2장 근무시간

- 근무시간 추가 (안 제13조 신설)
- 근무시간 등의 변경 추가 (안 제14조 신설)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추가 (안 제15조 신설)
-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추가 (안 제16조 신설)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 겸직허가 의무 규정 추가 (안 제27조 신설)

다.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정비

-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으로 정비 (안 제1조)
-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정비 (안 제12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정비 (안 제22조제5호)

3. 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5.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공무원증
 - ※ 제4장 공무원증 :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및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5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및 제11조(겸직 허가)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복장 등)
- 전국통합공무원노조 목포시지부 단체협약 사항(2017. 12. 15.)

6. 관련부서 의견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 2018. 7. 9.(월) ~ 7. 30.(월) / 21일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사항 없음**11.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자치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8-0580),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83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에 “제2장 근무시간”을 삽입한다.

제2장에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일”**을 **“5일 (분할 불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10일 (2회 분할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15일 (3회 분할 가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제59조에 따라 목포시 공무원 -----.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 <u>공무원증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및 복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가공무원 복무규칙</u> 」 (총리령)-----.
<신 설>	제2장 근무시간
<신 설>	제13조 (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신 설〉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시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시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2조 (공가) -----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10. (생략)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⑫ (생략)

⑬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

2. 20년 이상 30미만 : 10일

3. 30년 이상 : 10일

⑭ ~ ⑰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6.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 (특별휴가) ① ~ ⑫ (현행과 같음)

(13) -----

----- . 다음 각 호
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단,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1. ----- 5일
(분할 불가)

2. ----- 10일
(2회 분할 가능)

3. ----- 15일
(3회 분할 가능)

⑭ ~ ⑰ (현행과 같음)

제27조 (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의 건 제 출 서

조 례 명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공고 제2018-931호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 7. 9.

목 포 시 장

1. 제 목 : 도로지정(건축허가·신고)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18. 7. 9. ~ 2018. 7. 23.(15일간)
4. 공고내용

일련 번호	대 지 위 치 (목포시)	건축주 (동의자)	허가번호	도로지정 현황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길이 (m)	너비 (m)	면적 (㎡)	
1	남교동 1-1, 1-2, 2, 3-2	향원주택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22	49	0.54	26.4	동의
2	용해동 239-26	송동진/ 송지연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49	11.9	0.58	7	동의
3	산정동 1050-187, 1050-188	백용주	2018-건축행정과- 신축신고-12	26	0.5	12	동의
4	양동 24	이점순	2018-건축행정과- 신축허가-80	306	1.3	33.5	동의
5	양동 36-9	김춘봉	2018-건축행정과- 신축신고-13	4.6	2	2.4	동의

5. 공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에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 문의(☎061-270-34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8-948호

목포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7. 9.

목 포 시 장

☐ 부의안건 명

-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시 정 알 림 판

목포실내수영장 초등학교 여름방학 특별 수영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8. 7. 31.(화)~8. 24.(금) [4주간]
 - 모집기간 : 2018. 7. 17.(화) 09:00부터 선착순 접수
 - 강 습 일 : 화, 수, 목, 금(주 4회)
※ 매주 월요일 휴장, 토요일요일은 05:30~18:00까지 자유수영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실내수영장 연습사용료(35,000원)와 함께 제출
- 체육시설관리과 ☎ 061-277-3640, 270-8371**

“목포FC 물놀이장 개장”

- 개장기간 : 2018. 7. 14.(토)~8. 19.(일)
- 개장시간 : 10:00~17:00
- 장 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하프돔
- 놀이시설 : 성인풀, 유소년풀, 유아풀
※ 인조잔디바닥, 지하200m 천연암반수 사용
- 부대시설 : 샤워실, 탈의실, 매점
- 입 장 료 : 유아 3,000원(미취학 아동), 초중고 5,000원, 일반 5,000원



목포국제축구센터 ☎ 061-274-0171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부기간 : 2018. 7. 16.(월)~7. 31.(화)
- 납부대상 : 2018.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등
-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입출금가·인터넷), 가상계좌, ARS(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 납기일 경과 후 3%의 가산금, 독촉기간 경과 후 매 1개월 1.2%씩 최고 75% 가산금 부담

※ 독촉기간 경과 시 재산압류, 강제징수

- 재산세(주택분) 납부방법 변경 안내

구 분	2017년도 까지	2018년도 부터
1회 납부(7월)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2회 납부(7·9월, 각각1/2씩)	10만원 초과	20만원 초과

※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의 경우만 7월에 한꺼번에 과세

세정과 ☎ 061-270-3429, 3293~4

시 정 알 림 판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18. 7. 2.(월)~8. 31.(금)
- 신고대상 : 물놀이장 등 피서지 안전 위험요인, 풍수해 우려지역, 감전사고 등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전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안전신문고 앱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안전총괄과 ☎ 061-270-8648

2018년 국가 무료 암검진 실시



- 기 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10월 이내 조기검진 권장)
-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가입자 하위 50%인자(2017년 11월 기준)
 - ※ 월 보험료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4,000원 이하
- 검진항목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검진절차 : 국가암검진대상자 확인 ⇨ 국가암검진 실시 ⇨ 검진결과 통보
- 검진대상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목포시보건소 ☎ 061-270-8921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급여기준
 - 급여대상 : 만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적용개수 : 상, 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
- 본인부담률 변경내용
 - 시행시기 : 2018. 7. 1.

변경 전 50%	변경 후 30%
· 희귀난치성 질환자(C) 20%	· 희귀난치성 질환자(C) 10%
· 만성질환자 등(E, F) 30%	· 만성질환자 등(E, F) 20%

※ 치과 병·의원의 등록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관련정보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센터→건강보험안내→보험급여
 - 등록관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비 청구관련 : 1644-2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증진과 ☎ 061-270-8701